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11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 등

가.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
- 1급 박○○ 외 2명은 2021. 2. 24. 차주 (주)위○○○○에 대한 기업시설자금대출 2,280,000천원을 약정하면서 자기자금부담액 1,137,140천원의 조달가능 여부를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하지 않고 자기자금부담액의 입금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함.

나.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소홀

1)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

- 2급 이○○ 외 2명은 2021. 2. 24. 차주 (주)위○○○○에 대한 기업시설자금대출 2,280,000천원 약정 건을 심사하면서 자기자금 부담액 1,137,140천원의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함.

2)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
- 상임이사 김○○ 외 4명은 2021. 2. 24. 차주 (주)위○○○○에 대한 기업시설자금대출 2,280,000천원 약정 건을 심사하면서 자기자금 부담액 1,137,140천원의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3편 제44조(대출취급기준), 제49조(자기자금부담액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1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내부통제(현금 검사) 업무 소홀

- 1급 김○○은 부임(2023. 3. 15.) 이후 매월 2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현금 보유액 불시점검을 출납책임자가 실시하게 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출납정산표에 검사자로 날인만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」제16조(현금검사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7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금 지급 소홀 등

가.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금 지급업무 소홀

- 2급 공○○ 외 2명은 ① 2021. 5. 27. 차주 (주)공○○에게 3,900,000천원, ② 2021. 12. 20. 차주 (주)터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게 1,900,000천원의 주택건설자금대출을 각각 약정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함에도 철거업체와 철거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지급함.

나.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금 회수 등 업무 소홀

- 1급 김○○ 외 2명은 (주)공○○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대출 취급 후 주택이 완공되어 2023. 2. 15.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완공건물에 전입세대가 있음에도 감사기준일까지 전입세대 열람 및 임대보증금 확인을 통한 대출금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457조(특약사항), 제460조(대출금의 지급), 제463조(채권보전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3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건설자금대출 채권보전조치 소홀

- 2급 정○○ 외 2명은 2022. 5. 17. 차주 장○○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토지 담보로 주택건설자금대출 780,000천원을 취급 후 주택 완공에 따라 2023. 6. 26.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담보가액 재산출 결과 담보가액 미달금액(293,526천원) 중 5회에 걸쳐 총 35,000천원을 상환받아 감사일 기준 적정담보여력 대비 258,526천원 초과한 상태임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259조(후취담보 취득 시 유의사항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457조(특약사항), 제463조(채권보전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12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홀

- 2급 박○○ 외 2명은 2021. 11. 12. 서○○산업(주)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900,000천원 취급 시,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을 적용하여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함.

○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소홀

1)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

- 여신심사역 2급 최○○ 외 2명은 2021. 11. 12. 차주 서○○산업(주)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900,000천원 취급 건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로 적용한 영업점 의견을 인용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함.

2)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
- 상임이사 김○○ 외 5명은 2021. 11. 12. 광명지점 차주 서○○산업(주)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900,000천원 취급 건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로 적용한 영업점 의견 및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출을 승인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2편 <별표 14> (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)
1.(용어의 정의), 2-1.(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구룡포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12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홀

- 지점장 계약직 조○○ 외 3명은 2022. 6. 8. 개인사업자 차주 이○○, 2022. 7. 12. 개인사업자 차주 김○○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각각 1,200,000천원, 3,500,000천원 취급 시,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을 적용하여 타행대출금 대환 및 건축공사자금 등 용도로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함.

○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소홀

1)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

- 여신심사역 2급 최○○ 외 2명은 2022. 6. 8. 개인사업자 차주 이○○, 2022. 7. 12. 개인사업자 차주 김○○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각 1,200,000천원, 3,500,000천원 취급 건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로 적용한 영업점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함.

2)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
- 상임이사 김○○ 외 5명은 2022. 6. 8. 개인사업자 차주 이○○, 2022. 7. 12. 개인사업자 차주 김○○에 대한 나대지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각 1,200,000천원, 3,500,000천원

취급 건을 심사하면서 차주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담보물 소재지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담보대출로 적용한 영업점 의견 및 여신심사역 심사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출을 승인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업 감독규정」제16조의4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), <별표 2>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) 1. (용어의 정의), 2-1. (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171조의2(취급기준)